

의안번호	2201493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4.8.19.
추 계 번호	24B17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의 설치)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제5항)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의무규정
2	안 제22조 (2050 지방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방위원회의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2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각 호의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이에 따라 노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다수의 단체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 호의 법정 단체로부터 모두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각 호의 단체로부터 추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런데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등의 경우 해당하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후보자 추천이 필요한 단체의 수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인력 등 행정비용을 현시점에 추정하기 곤란함
 - 예를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별 노동조합 등은 6,005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13,943개 단체 등으로 나타남

[표 1] 총연합단체별 노동조합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조합 수	조합원수
한국노총	2,325	1,121,819
민주노총	225	1,099,805
한장노총	7	11,222
전국노총	19	3,792
대한노총	5	3,264
미가맹	3,424	482,582
전체	6,005	2,722,484

자료: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24. 4.

[표 2]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 명)		
	조합 수	조합원수
총계	6,005	2,722,484
○ 단위노조		
- 기업(사업장)	5,255	1,081,190
- 지역별·업종별노조	523	511,575
- 산별노조	153	1,129,719
○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5	-
- 연합단체	69	-

자료: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24. 4.

[표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3,943	1,475	12,468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24.6.30. 기준

- 다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개요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현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자료

□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 －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4 시행)에 근거
- (성격)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
- (기능)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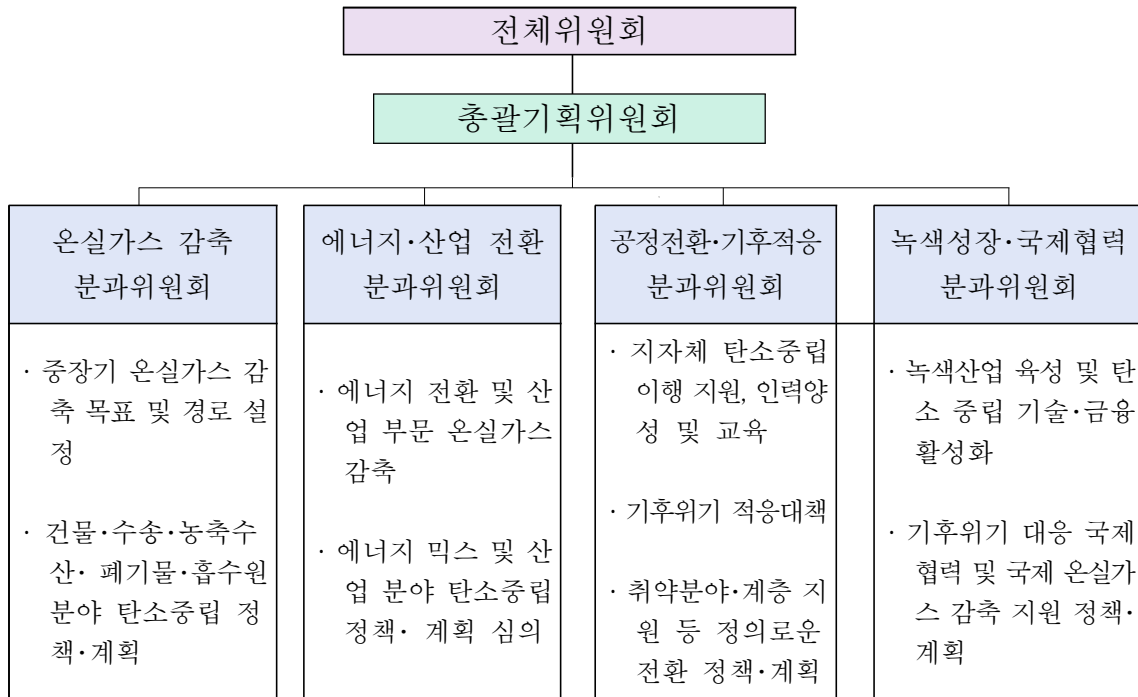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기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구성 현황

- (위원)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정부위원(21명)* 및 민간위원(29명)
 - － 중앙행정기관장(21명):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국조실, 금융위, 산림청, 기상청
- (분과위) 총괄기획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
 -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참고자료 2]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현황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90개 기초자치단체

시도	위원회 구성						관할 기초지자체		
	일 자 (예정일)	근 거 (제정일)	위원장	위 원 수			총 계	위원회 구성	
				계	당연	위촉		계	시군구명
서울	'22.9.7.	조례 (‘22.7.11.)	행정 부시장 외1	40	10	30	25	22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부산	'22.4.21.	조례 (‘22.7.6.)	경제 부시장 외1	50	6	44	16	3	연제구, 사상구, 부산진구
대구	'23.3.17.	조례 (‘22.6.30.)	행정부시장	15	6	9	9	1	달서구
인천	'23.7.1.	조례 (‘22.11.9.)	행정 부시장 외1	30	8	22	10	2	부평구, 서구
광주	'23.2.6.	조례 (‘22.4.26.)	시장 외 1	50	9	41	5	4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22.12.14.	조례 (‘22.8.12.)	행정 부시장 외1	20	6	14	5	1	서구
울산	'23.7.11.	조례 (‘22.7.28.)	행정 부시장 외1	27	3	24	5	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23.3.30.	조례 (‘22.4.20.)	시장 외 1	20	6	14	—	—	
경기	'23.4.24.	조례 (‘22.7.19.)	도지사 외1	39	15	24	31	14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광명시
강원	'23.10.4.	조례 (‘22.6.30.)	도지사 외1	30	6	24	18	4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양구군
충북	'22.12.29.	조례 (‘22.11.4.)	도지사 외1	30	6	24	11	3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충남	'24.1.16.	조례 (‘21.12.30.)	도지사 외1	50	9	41	15	8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22.10.20.	조례 (‘22.5.13.)	도지사 외1	30	12	18	14	6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전남	'23.3.6.	조례 (‘22.5.19.)	도지사 외1	40	15	25	22	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

시도	위원회 구성						관할 기초지자체		
	일 자 (예정일)	근 거 (제정일)	위원장	위 원 수			총 계	위원회 구성	
				계	당연	위촉		계	시군구명
									군
경북	‘22.11.4.	조례 (‘22.9.22.)	행정부지사	24	7	17	22	3	구미시, 의성군, 울진군
경남	‘23.10.1.	조례 (‘22.7.7.)	도지사외1	30	8	22	18	8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22.11.1.	조례 (‘22.8.17.)	도지사외1	66	22	44	—	—	
총계	17						226	90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자료(2024.6. 기준)